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3. 31 선고 2020가단937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21. 3. 3

판결 선고 2021. 3. 31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87. 5. 1. 접수 제348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87. 5. 1. 채무자 원고,채권최고액 300만 원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87. 2.26.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(이하 위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근저당권'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.

나. E은 2018. 7. 8. 사망하였고, 그의 처인 피고 B,자녀인 피고 C, D이 공동상속하였다.[인정근거] 피고 B, C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3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D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,그 변제기에 관한 별다른 주장·입증이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.

따라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,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, C은 원고로부터 아직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E이 원고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피담보채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.

판사 정 종륜

별지